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체육시설업자 등을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추가 〉
■ 양부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682호)

2025.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혜 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내용	3
2.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의 유형과 지위	5
3. 체육시설업자등을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추가	1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양부남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2025. 3. 6.
3. 회 부 일: 2025. 3.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특정 시설 중 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 축구교실 등 학교 밖 체육 관련 사설학원과 같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시설인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 시설 중 하나인 “청소년활동시설”에 해당하는지 해석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의 체육시설업자와 그 종사자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명시적으로 추가하고자 함. 이를 통해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체육시설업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됨을 명확히 알려려는 것임(안 제10조 제2항 제27호 신설).

I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체육시설의 체육시설업자와 그 종사자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추가하는 것임(안 제10조 제2항제2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생략)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 ----- ----- ----- ----- ----- -
1. ~ 26. (생략)	1. ~ 26. (현행과 같음)
<u><신설></u>	2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현행	개정안
③ · ④ (생략)	<u>지정하는 체육시설의 체육</u> <u>시설업자와 그 종사자</u> ③ · ④ (현행과 같음)

2.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의 유형과 지위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의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상해·폭행, 유기·학대, 체포·감금 등 일정한 유형에 해당하는 범죄이며(제2조제4호),¹⁾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등도 기본적으로는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일반적 절차에 의하나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절차상의 특례도 규정하고 있음.

1)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학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 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의 죄
 - 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 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 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차.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카.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 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하. 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 이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그 신속한 발견과 대응을 위하여
일정한 범위의 사람에게는 범죄신고의무가 부여되어 있음.

가. 신고의무자의 유형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은 신고의무자를 총 2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아동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보육·교육
기관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포함됨.²⁾

2)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이러한 현행법의 태도는 일상적인 보호·복지·교육, 피해 발생 시의 보호·복지 지원 및 의료·구급 지원 등 다양한 상황에서 아동학대 범죄사건의 단서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신고 의무자로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제10조제2항) >

구 분	이용자	신고의무자(시설·기관의 경우 그 장 및 종사자)	비 고
보호·복지· 교육 등	아동·청소년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센터	제1호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 제외)	제2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제3호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제12호
		유치원	제13호
		아동보호전문기관	제14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제18호
		청소년보호센터, 청소년재활센터	제19호
		학교	제20호
		학원, 교습소	제22호
		아이돌보미	제23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제24호
		입양기관	제25호
		한국보육진흥원	제26호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제27호
	일반·장애인 등	건강가정지원센터	제5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6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7호
		장애인복지시설	제16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제21호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6.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7.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학교의 장으로부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위탁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과 그 종사자

구 분	이용자	신고의무자(시설·기관의 경우 그 장 및 종사자)	비 고
피해 구제	가정폭력 피해자 등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제4호
		성매매 방지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제8호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	제9호
의료·구급	-	119구급대원	제10호
		응급의료기관등 종사 응급구조사	제11호
		의료기관	제15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 재활시설	제17호

○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아동학대범죄라는 의심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즉시 조사나 수사에 착수하여야 함 (제10조제2항 및 제4항).³⁾

- 물론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이라도 아동학대범죄 또는 그 의심 사실을 지방자치단체나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함(제10조제1항).⁴⁾

3)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 26. (생략)

④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4)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나. 신고의무자에 대한 보호와 제재

- 아동학대처벌법은 신고의무의 실현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신고의무 이행자에 대한 보호와 신고의무 미이행 시의 제재도 함께 규정하고 있음.
- 신고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피신고자의 보복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신고의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는, 신고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보도 금지(제10조제3항),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금지(제10조의2), 각 금지행위 위반 시 처벌(제62조제2항, 제62조의2) 및 신고자를 위한 신변안전조치(제10의3) 등이 있음.⁵⁾

5)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3(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②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조의2(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죄) ①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2.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3.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4.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5.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6.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이러한 신고자 보호는 신고의무자 아닌 사람이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되나 법률상 신고가 강제되는 신고의무자의 경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것임.

□ 한편,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제63조제1항제2호),⁶⁾ 신고의무 불이행을 넘어 직접 보호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각 죄에 정한 형보다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됨(제7조).⁷⁾

6)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7)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체육시설업자 등을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추가

가. 검토의견

□ 개정안은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처럼 보이나 현행법에서도 체육시설 종사자 등은 신고의무자에 포함되고 있으므로,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한다기보다는 일정한 유형의 체육시설업자 등이 신고의무자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임.

○ 개정안은 신고의무자의 유형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의 체육시설업자 등’을 추가하고 있는데, 현행 제10조제2항제18호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장과 종사자를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 시설에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도 포함됨.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에는 청소년의 활동에 제공되는 청소년활동시설이 포함되고, 동법 제17조에 따라 청소년 활동시설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규율됨.⁸⁾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17조(청소년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제2호에 따르면, 청소년활동 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로 나뉘며, 이중 후자의 유형은 동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에서 규율하는데, 동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청소년이용시설에 체육시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이 포함됨.⁹⁾¹⁰⁾
- 다만, 무도학원과 무도장의 경우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에 포함되지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에 따라 청소년유해업소로 분류되므로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의 출입이 제한됨.¹¹⁾

9)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 바. (생략)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제32조(청소년이용시설) ④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2조 제4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체육시설

10)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가이드북’에서는 체육시설 종사자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법정교육인 신고의무자 교육의 대상이 된다고 안내하고 있음.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예방교육 가이드북 (2025), 23.

11) 「청소년 보호법」은 19세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지 아니한 사람을 청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청소년유해업소에서의 출입 등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이므로,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아동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의 출입이 제한됨.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 4. (생략)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따라서 개정안에 대하여는 수범자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자와 그 종사자를 법률 문언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한지, 신고의무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일정한 범위의 체육시설업자 등에 한정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현행법 제10조제2항제18호에 따라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청소년시설에는 체육시설 외에도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관 등 다양한 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러한 시설 모두가 아동학대 처벌법의 문언에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함.¹²⁾

1) ~ 5) (생략)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① (생략)

②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③ ~ ⑥(생략)

1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7조(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2조 제4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문화시설
2.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과학관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체육시설
4.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6.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수목원
7.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5호의 사회복지관
8. 시민회관·어린이회관·공원·광장·둔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로서 청소년활동 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설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청소년활동과 관련되어 설치된 시설

□ 또한,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체육시설업자”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개정안을 처리하는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전반의 법률 문언을 고려하여 해당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아동학대처벌법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뜻하는 “아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뿐, 이와 별도로 “청소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아동·청소년”은 “아동”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은 기본적으로 실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연인을 열거하고 있는 조항이어서 ‘기관 또는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체육시설업자와 그 종사자”도 이에 맞추어 “체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 수정할 수 있을 것임.

-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동법 제2조제3호),¹³⁾ 법인이라도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자연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

13) **체육시설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체육시설업자”란 제19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 한편, 2025년 6월 21일, 법률 제20576호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법에는 대안교육기관 또는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 등이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추가
되었으며 그 규정이 제10조제2항제27호이므로, 개정안을 처리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조문의 위치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나. 관계기관의 의견

- 법무부는, 현행법의 체계가 복잡하여 수범자가 쉽게 알기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하여 체육시설의 종사자 등이 신고의무자임을 명확하게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다만 개정안을 처리할 경우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문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개 정 안	수정의견
2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u>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의 체육시설업자와 그 종사자</u>	2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u>다른 법률에 의해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u>

-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의 종사자 등이 신고의무자임을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에 따를 경우 신고의무자에 관한 사항을 더 쉽게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051